

대만 식약서 7.1부터 실시되는 신규·수정 규정 공고

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7.1일부터 지난 신규 및 수정 실시되는 규정에 대해 요약 발표하였다. 내용은 아래와 같다

항목	신규, 수정 규정 명칭	실시 일자	중심내용
1	포장식품영양표시준수사항	2015.7.1	<p>현행 규정 비교 시 수정 내용의 중점 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성분의 함량을 강화한 항목 2. 강제표기양식 2종 명확히 규정 3. 열량 및 각항 1일 영양소 섭취량 참고 수치 및 1~3세 및 임산부 양종 부류의 매일 참고 수치 기입
2	유전자변형식품표기규정	2015.7.1.~12.31 (단계별 실시)	<p>현행 규정과 비교 시 수정 내용의 중점 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범위 확대, 현행 포장 식품을 식품첨가물 및 벌크 식품으로까지 범위 확대 2. 비유전자변형식품원료는 유전자변형식품원료가 3%를 초과하지 않은 것임 3. 정밀가공식품(예: 대두, 간장, 옥수수과당 등)은 표기 면제에서 <유전자변형>으로 표기의무화 됨 4. <비유전자변형식품> 또는 <유전자식품 아님>이라는 식품범위 문구를 명확히 기재 5. 표기 글자는 기타 문자와 구별되어야 하며, 글 길이, 폭은 2mm를 넘지 않아야 함
3	알레르기식품표기	2015.7.1	<p>새우, 게, 망고, 땅콩, 우유, 알류 등 6가지 항목은 알레르기성 원료 및 그 제품으로 <본 제품은 00가 포함 됨> 또는 <본 상품은 00 포함되어, 알레르기 기 체질자에게는 적당하지 않음> 등 동일 의미의 글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</p>
4	진균류식품표기관리원칙	2015.7.1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균류 원료의 중문명칭 및 라틴학명을 표기해야 하고, 그 사용부위(자실체, 균사체 또는 자실체 추가 균사체) 및 그 배양 방식 표기 2. <진균류 균사체> 사용하였으나 <진균류 자실체>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<00균사체>를 표기하고 외포장에 자실체 도안을 표출해서는 안 됨 3. <진균류 균사체와 자실체의 혼합>인 상품은 <본 상품은 00균사체와 자실체 혼합 임> 또는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.

2015. 6. 30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란